

2017학년도 대학평의원회						간사	의장		
회의록(4차)							안승섭		
일 시	2018. 01. 29.	(월 요일)	15:00	장 소	본관 3층 중회의실				
참석위원	안승섭(교무처장), 김성찬(기획처장), 김희덕(건설공학부), 유호정(글로벌통상학과), 윤태한(글로벌통상학과), 유병선(사무처장), 류장호(학생부장), 김준환(기획팀장), 서석교(재무팀장)		불참위원	고재열(총학생회장), 이한수(경일대학교 동문대표)					
안 건	대학평의원회 규정 개정(안) 심의								

토의 내용 요지 및 합의 사항

- (의장) 성원이 되었으므로, 개회를 선언함

【대학평의원회 규정 개정(안) 심의】

■ 토의 및 결의 사항

<토의 사항>

- (의장) 경일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고, 규정 개정 관련 의견을 평원들에게 요구함.
- (평의원) 규정개정 취지에 대해 질의함.
- (의장) 대학평의원회 구성 및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고, 회의 개최 및 운영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정 개정임을 설명함.
- (평의원) 규정 제3조(위촉)에서 교원 평의원 중 총장이 추천하는 교원 2명에 대한 위촉 세부기준을 규정에 명시 할 것에 제시함.
- (의장) 타대학 규정과 비교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다음 대학평의원회에서 재논의 할 것을 제안함.
- (위원회) 참석의원 전원이 찬성함.

<결의 사항>

- (의장) 경일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규정 개정(안)을 다음과 같이 심의·의결 하기로 함.

<뒷면 계속>

김성찬	김희덕	유호정	윤태한	유병선	류장호	김준환	서석교	고재열	이한수
								불참	불참

토의 내용 요지 및 합의 사항

현 재 내 용	개 정 안	비 고
<p>제2조(자격) ①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교원 평의원은 경일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 부교수 이상인 자 2. 직원 평의원은 경일대학교 사무직원으로서 7급 이상인 자 3. 학생 평의원은 3학년 이상의 재학생 4. 기타 평의원은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<p>②평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</p> <p>③교원 평의원과 직원 평의원이 임기 중 다음 각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휴직 및 퇴직 2. 강봉 이상의 징계 처분 3. 6개월 이상의 해외연수 및 연구년 교원 <p>④학생 평의원이 다음 각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휴학 및 졸업 2.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 처분 3. 교환학생으로 3개월 이상 파견 	<p>제2조(구성 및 자격) ①평의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,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교원 5명(이하 “교원 평의원”이라 한다) 2. 직원 4명(이하 “직원 평의원”이라 한다) 3. 학생 1명(이하 “학생 평의원”이라 한다) 4.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1명(이하 “외부 평의원”이라 한다) <p>②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교원 평의원은 경일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 부교수 이상인 자 2. 직원 평의원은 경일대학교 사무직원으로서 7급 이상인 자 3. 학생 평의원은 3학년 이상의 재학생 4. 기타 평의원은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<p>③평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</p> <p>④교원 평의원과 직원 평의원이 임기 중 다음 각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휴직 및 퇴직 2. 강봉 이상의 징계 처분 3. 6개월 이상의 해외연수 및 연구년 교원 <p>⑤학생 평의원이 다음 각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휴학 및 졸업 2.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 처분 3. 교환학생으로 3개월 이상 파견 	문구 추가 조항 추가
<p>제3조(위촉) 정관 제35조의3에서 규정한 평의원의 임명 및 위촉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</u> 총장이 추천하는 교원 2명과 교수협의회에서 추천하는 3명을 포함하여 5명의 평의원을 총장이 위촉한다. 2. <u>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</u> ‘사무처장’ 1명과 직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3명을 포함하여 4명의 평의원을 총장이 위촉한다. 3. <u>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</u> 총학생회장이 추천하는 1명을 총장이 위촉한다. 4. <u>기타평의원은</u> 총장이 위촉한다. 	<p>제3조(위촉) 정관 제35조의3에서 규정한 평의원의 임명 및 위촉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교원 평의원은</u> 총장이 추천하는 교원 2명과 교수협의회에서 추천하는 3명을 포함하여 5명의 평의원을 총장이 위촉한다. 2. <u>직원 평의원은</u> ‘사무처장’ 1명과 직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3명을 포함하여 4명의 평의원을 총장이 위촉한다. 3. <u>학생 평의원은</u> 총학생회장이 추천하는 1명을 총장이 위촉한다. 4. <u>외부 평의원은</u> 총장이 위촉한다. 	문구 수정
<p>제6조(회의) ①항 생략</p> <p>②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2.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.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	<p>제6조(회의) ①항 좌동</p> <p>②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이사장 또는</u>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2.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.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<p>③회의 개최 시 회의 10일 전에 학교 홈페이지에 사전공개하며, 회의의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, 의장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의의 개최 및 진행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.</p>	문구 추가 조항 추가
<p>제8조(회의록) 평의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후 출석의원 전원이 서명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	<p>제8조(회의록) ①평의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후 출석의원 전원이 서명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②평의원회의 회의록은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 단,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의원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.</p>	조항 추가
	부 칙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	